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5.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7. 5.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유 병 현

가. 제안이유

2006.9.1 및 2006.12.30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1)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16조)

○ 현행 매년 과세하는 면허세 납기를 1월 16일부터 1월 31
일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65조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는 그 면허증서를 받은 때로 규정함

(2)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 정비(안 제21조의2)

제21조의2제3호나목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가) “1,000분의 1.2” 를 “1,000분의 1.5”로,
- (나) “48,0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를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로
- (다) “192,000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선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제16조제2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면허세 납기를 정하고자 함.

○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한 안 제21조의2 제3호나목에서는 2006년9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자 함.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안 제16조제2호 단서규정에 면허세 납기를 규정한 것은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1조의2 제3호나목에 규정된 재산세 세율은 2006년 9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04년, 2005년, 2006년

도에 각각 20%씩 감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던 재산세를 동 조례안이 개정되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을 경우 해당납세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도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사전홍보와 대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6.9.1 및 2006.12.30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16조)

- 현행 매년 과세하는 면허세 납기를 1월 16일부터 1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65조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는 그 면허증서를 받은 때로 규정함

나.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 정비(안 제21조의2)

제21조의2제3호나목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1) “1,000분의 1.2” 를 “1,000분의 1.5”로,
- (2) “48,0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로
- (3) “192,000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함

3. 개정근거

「지방세법」 제3조, 제29조, 제165조, 제188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7. 3. 29 ~ 2007. 4. 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4. 26)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
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제21조의2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 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u><단서 신설></u></p>	<p>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p style="text-align: center;"><u>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u></p>																				
<p>제21조의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및 2. (생략) 3. 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략) 나. <u>가목이외의 주택</u>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width: 50%;"><u><과세표준></u></th> <th style="text-align: left; width: 50%;"><u><세율></u></th> </tr> </thead> <tbody> <tr> <td>4,000만원 이하</td> <td>1,000분의 1.2</td> </tr> <tr> <td>4,000만원 초과</td> <td>48,000원 + 4,000만원</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초과금액의 1,000분의 2.4</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92,000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td> </tr> </tbody> </table>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2	4,000만원 초과	48,000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	1억원 초과	192,000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p>제21조의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및 2. (현행과 같음) 3. 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현행과 같음) 나. <u>가목이외의 주택</u>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width: 50%;"><u><과세표준></u></th> <th style="text-align: left; width: 50%;"><u><세율></u></th> </tr> </thead> <tbody> <tr> <td>4,000만원 이하</td> <td>1,000분의 1.5</td> </tr> <tr> <td>4,000만원 초과</td> <td>6만원 + 4,000만원</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 </tr> </tbody> </table>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2																				
4,000만원 초과	48,000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																				
1억원 초과	192,000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및 5. (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및 5. (현행과 같음) 																				